

제429회 국회  
(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 회의록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23일(화)

장 소 국회운영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8)
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9)
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8)
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54)
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22)
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9)
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9)
8. 국회기록원법 제정 의견 제출(의장 제의)
9. 국회법 개정 의견 제출(의장 제의)
10. 국회도서관법 개정 의견 제출(의장 제의)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8)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5)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8)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8)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86)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9)
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61)
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48)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7)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3)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6)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23)
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26)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2)
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7)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7)
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7)
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5)
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87)
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89)
31. 국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32.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3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2)
3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1)
3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7)
3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8)
37.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0)
3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2)
3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7)
4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8)
4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07)
4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5)
4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44)
4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47)
4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7)
4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2)
47.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0)
4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29)
4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8)
5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60)
5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0)
5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0)
5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1)
5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25)
5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8)
5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6)
5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8)
5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9)
5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1)

- 
6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27)  
 61. 국회경위처법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7)  
 6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8)  
 63. 국회의장 및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6)  
 64. 국회경호처법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2)  
 6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3)  
 6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68)  
 6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66)  
 68.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5)  
 69. 국회경호처법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80)  
 70. 국회법 개정 의견 제출(의장 제의)  
 71. 국회사무처법 개정 의견 제출(의장 제의)
- 

### 상정된 안건

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8) .....	5
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9) .....	5
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8) .....	5
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54) .....	5
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22) .....	5
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9) .....	5
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9) .....	5
8. 국회기록원법 제정 의견 제출(의장 제의) .....	6
9. 국회법 개정 의견 제출(의장 제의) .....	6
10. 국회도서관법 개정 의견 제출(의장 제의) .....	6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8) .....	6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5) .....	6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8) .....	6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8) .....	6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86) .....	6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9) .....	6
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61) .....	6
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48) .....	6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7) .....	6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3) .....	6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6) .....	6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23) .....	6
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26) .....	6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2) .....	6
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7) .....	6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7) .....	6
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7) .....	6
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5) .....	6
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87) .....	6
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89) .....	6
31. 국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	6
32.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	6
3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2) .....	6
3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1) .....	6
3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7) .....	6
3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8) .....	6
37.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0) .....	6
3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2) .....	6
3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7) .....	6
4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8) .....	6
4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07) .....	6
4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5) .....	6
4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44) .....	6
4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47) .....	6
4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7) .....	6
4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2) .....	7
47.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0) .....	7
4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29) .....	7
4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8) .....	7
5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60) .....	7
5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0) .....	7
5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0) .....	7
5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1) .....	7
5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25) .....	7
5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8) .....	7
5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6) .....	7

5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8)	7
5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9)	7
5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1)	7
6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27)	7
61. 국회경위처법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7)	7
6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8)	7
63. 국회의장 및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6)	7
64. 국회경호처법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2)	7
6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3)	7
6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68)	7
6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66)	7
68.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5)	7
69. 국회경호처법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80)	7
70. 국회법 개정 의견 제출(의장 제의)	7
71. 국회사무처법 개정 의견 제출(의장 제의)	7

(10시47분 개의)

○소위원장 문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운영위원회 제1차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1건이며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주요 주제별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토론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의사를 정리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8)
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9)
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8)
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54)
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22)
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9)
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9)

8. 국회기록원법 제정 의견 제출(의장 제의)
9. 국회법 개정 의견 제출(의장 제의)
10. 국회도서관법 개정 의견 제출(의장 제의)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8)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5)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8)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8)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86)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9)
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61)
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48)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7)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3)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6)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23)
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26)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2)
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7)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7)
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7)
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5)
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87)
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89)
31. 국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32.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3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2)
3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1)
3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7)
3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8)
37.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0)
3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2)
3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7)
4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8)
4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07)
4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5)
4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44)
4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47)
4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7)

- 
4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2)
47.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0)
4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29)
4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8)
5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60)
5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0)
5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0)
5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1)
5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25)
5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8)
5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6)
5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8)
5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9)
5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1)
6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27)
61. 국회경위처법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7)
6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8)
63. 국회의장 및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6)
64. 국회경호처법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2)
6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3)
6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68)
6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66)
68.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5)
69. 국회경호처법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80)
70. 국회법 개정 의견 제출(의장 제의)
71. 국회사무처법 개정 의견 제출(의장 제의)

○소위원장 문진석 의사일정 제1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1항 국회사무처법 개정 의견 제출까지 71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7항까지 위원회 고발과 관련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상수 수석전문위원, 심사자료의 내용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수석전문위원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위원회 고발 관련 7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활동 종료 위원회 위증죄 고발 요건 신설 그리고 고발 대상기관 확대·변경 및 수사 중간보고 도입입니다.

증감법, 오기형 의원, 이해식 의원, 이병진 의원, 박성준 의원, 황운하 의원, 전현희 의원, 전용기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항입니다.

활동 종료 위원회 위증죄 고발 요건 신설 사항입니다.

오기형 의원, 전현희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오기형 의원안은 위증죄에 대하여 고발이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현희 의원안은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 본회의가 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고발방식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반드시 존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있어야 되고 고발 명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 명의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체토론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모두 증인·감정인 등을 조사한 위원회가 존속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활동기한이 정해져 있는 특별위원회의 경우 활동기한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특별위원회의 소멸로 인해서 고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국회는 활동기한이 종료된 위원회의 위원이었던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의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증감법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작년에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연말에 기간 제한 없이 위원이었던 의원들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면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재의요구를 함에 따라 재의를 한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전현희 의원안은 정부 재의요구 이유에 나타난 우려를 개정안에 반영하는 동시에 위증죄에 대한 고발 공백을 없애 국회의 권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고발 없이 위증죄 공소제기를 하려는 오기형 의원안에 따르면 본회의·위원회의 고발이 없어도 검사가 직접 공소제기할 수 있게 되는데 판례는 위증죄의 고발 여부를 국회의 자율권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회의·위원회의 고발을 공소제기 요건에서 제외하는 경우 검사의 자의적 공소제기 및 정쟁 유발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페이지, 부칙 적용례입니다.

전현희 의원안은 개정안 시행 전에 활동기한이 종료된 위원회에서 위증 등의 죄를 범한 사람도 본회의가 고발할 수 있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안입니다. 진정소급입법 여부입니다.

새로운 범죄를 규율 또는 형량을 가중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처벌이 사후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 사안은 비교형량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고발 대상기관 확대·변경입니다.

고발 대상기관 확대·변경은 이해식 의원, 이병진 의원, 박성준 의원, 황운하 의원, 전용기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개정안들은 불출석 등의 죄, 국회 모욕의 죄, 위증 등의 죄의 고발 대상기관을 확대·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해식 의원안은 검찰 외에—현재 검찰로 한정돼 있습니다—경찰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병진 의원안은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기관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의원안은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황운하 의원안은 검찰이 아닌 경찰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전용기 의원안은 검찰 외에 경찰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증감법은 고발 시에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검찰총장이 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들은 국회증언감정법상 죄에 대해서 검찰 외에 경찰 또는 수사처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거나 검찰이 아닌 경찰 또는 수사처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검찰총장, 경찰총장 또는 수사처장으로 하여금 그 처분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행 검경수사권 조정과 수사처 설립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송 보고입니다.

이해식 의원안은 고발을 접수하거나 수사를 개시한 기관이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련 서류 등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고발 사건의 수사기관 간 이송 과정 및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절차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련 서류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수사정보의 비공개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수사 종결 후 최종 처분결과 보고 시에는 요구하지 않는 관련 서류를 수사과정 중 이송 절차에 있어서만 요구하는 것이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서 ‘관련 서류’는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페이지, 법제적 측면입니다.

이병진 의원안은 국회 고발 근거 규정인 제15조제1항에서 고발 대상기관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그 외 개정안은 국회 고발 근거 규정에서 고발 대상기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검사의 수사종결 의무 규정인 제15조제4항에서 고발 대상기관을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조문 체계상 이병진 의원안과 같이 국회 고발 근거 규정에서 고발 대상기관을 명시하는 방법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한 이병진 의원안은 고발 대상기관을 수사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현행법상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검찰에 고발할 수 없게 되므로 이를 고려해서 수정의견을 하단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수정의견, 제15조(고발)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중인·감정인 등이 제12조·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사기관의 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4항, ‘제1항에 따른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항,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사건을 이송 또는 이첩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음, 관계 부처 의견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하는 주체에 수사처검사를 추가하고 처분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주체에 수사처장을 추가하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시행일입니다.

별도로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가 없는 점을 고려해서 적정한 시행일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의견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수사 중간보고 도입입니다.

수사 중간보고, 전용기 의원안입니다.

전용기 의원안은 수사기관의 장이 2개월 이내 수사 미종결 시 중간보고 및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등이 중간보고 없이 최초 수사기간 2개월 또는 연장 수사기간 2개월을 초과하여 수사 중인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명 요구, 검사 등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일반적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기간이 3개월 이내고 증언감정법상 국회의 고발 사건 수사기간이 2개월입니다. 개정안은 국회 고발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사를 마치도록 강제하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국회 고발 사건에 대하여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고 지연되는 경우가 대다수며, 수사 중간보고 및 수사기간 연장 도입 시 수사기관의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촉구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1페이지, 필요조치 요구 사항입니다.

수사기간 미준수에 대한 필요조치 요구 도입 시 수사기간의 실효적인 준수를 확보하여 수사 지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칙입니다. 적용례 관련입니다.

개정안 시행 당시 수사 중이기는 하지만 수사기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따른 수사 중간보고 및 수사기간 연장 등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과조치는 개정안 시행 당시 이미 수사기간 2개월을 초과하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간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중간보고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는 개정안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시행일부터 1개월의 수사기간과 1개월의 연장 수사기간, 총 2개월을 검사에게 부여하여 적정한 수사기간을 보장하는 한편 중간보고 없이 새로 부여된 1개월을 초과하여 수사 중이거나 연장된 수사기간 1개월을 초과하여 수사 중인 때에는 필요조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과도적 조치를 규정한 것으로 법적 안정성 확보 및 적정한 유예기

간 보장 측면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부처 의견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일률적으로 짧은 수사기간을 강제할 경우 가별적 사안임에도 무죄에 이르게 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미에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진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전에 대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위원 말씀드려도 됩니까?

○소위원장 문진석 예, 말씀하십시오.

○곽규택 위원 곽규택 위원입니다.

지금 국회법상 위증죄에 대한 고발은 명칭은 고발이라고 돼 있지만 일반적인 형소법상의 고발하고는…… 굉장히 특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사실 말이 고발이지 거의 수사자획처럼 이해하고 법을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개정의견들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 위증죄라고 하는 것은 친고죄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는데, 판례나 학설상으로 국회의 자율성을 감안해서 국회에서 고발이 있을 때만 수사를 하고 기소할 수 있는, 그렇게 지금 해석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범위를 넓히거나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은 지금 검찰을 폐지하고 수사 자체, 수사에 대한 개시를 아예 못하게 하는 법안들을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이게 그 개정 내용을 봐 가지고 전반적으로 기존에 있는 고발에 관련된 규정들도 다 수정이 불가피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고발의 범위라든지 대상기관이라든지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는지 일단 의문이고.

지금 내용 중에서도 고발 대상기관을 공수처로 하려면 공수처법 개정안이 돼 가지고 국회 위증죄까지 포함이 돼야 그다음 논의가 가능한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순서상으로 추후에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개정 작업이라든지 공수처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게 다 됐을 때 그때 논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진석 또 의견 있습니까?

백승아 위원님.

○백승아 위원 활동 종료 위원회 위증죄 고발 오기형 의원안은 고발이 없더라도 공소제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전현희 의원안은 전속고발권으로 국회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고 또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내란국조청문회에서 한덕수 전 총리 또 최상목 전 장관, 이상민 전 장관 등의 거짓 증언, 위증 혐의가 확인됐는데 활동이 종료돼서 고발을 못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위증 고발 자체가 불가한 것은 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진석 김남근 위원님.

○**김남근 위원** 하나씩 좀 말씀드리면, 먼저 첫 번째는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는 위원회의 경우에 있어서는 활동기간이 종료한 다음에 그 활동기간 내에서 이루어졌던 위증에 대해서 처리할 수가 없는 이것은 입법 공백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입법 공백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어서 이건 큰 이견이 없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기형 의원안에 대해서는 지금 처리하기는 좀 곤란하다, 좀 논란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수사기관에 대해서는 꽈규택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으니까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공수처는 제외를 하고 검찰하고 사법경찰에 대해서만 두 군데로 해 놓는, 그래서 이것은 수사와 기소 분리에 관한 입법과 상관없이 어쨌든 수사기관 자체를 검찰로만 독점 관할권을, 수사권을 갖게 하는 것도 원래부터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법경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시행을 공포 시부터 하는 것들은 저는 입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래서 공포 시부터 하는 걸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나가 더 있었는데 중간보고 문제는 국회에서 고발을 한 것이니만큼 빠르게 수사를 하도록, 신속하게 하도록 촉구하려는 것인데 이게 훈시규정처럼 운영이 되면서 2개월 내만이 아니라 1년, 2년씩 이렇게 장기적으로 수사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다시 조금 더 신속한 수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그런 점에서 다시 중간에 국회가 보고를 받도록 하는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입법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문진석** 유상범 수석님.

○**신장식 위원**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합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1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요 공수처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위증죄를 수사처에서 수사할 수가 있습니다.

○**신장식 위원** 그래서 별도 공수처법 개정이라든지 제가 살펴본바 수사기관과 관련된 부수법안, 수사기관의 개별법에 추가로 수사대상을 규정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그런 걱정 없이, 공수처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걸 기다릴 이유가 법체계에서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소위원장 문진석** 유상범 위원님.

김 수석님, 위원님이 지금 발언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하시지 말고 끝나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예.

○**소위원장 문진석**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수석님, 14조 1항에 보니까 증언·감정에 관한 위증의 죄가 되어 있네요?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는 그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위증을 했다가 위원회 기간 중에, 같은 기간 중에 그 진술을 번복해서 자백을 하면 당연히 위증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어떤 판례 내용을 아마 여기다 명시한 정도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보니까.

1항의 자백은 안건심의, 국정감사·국정조사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는 내용인데 판례가 한 회기에 위증을 하게 되면 회기 중에 변복해서 진실을 얘기하면 위증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판결을 기재한 것 같은데 14조 1항에 보면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 진술을 할 때는 위증의 죄로 처벌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증언·감정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고.

문제는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고발을 하여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 아까 우리가 말한 게 국회가 모든 고발을 할 때 위증을 확인하고 고발하는데 사실은 특별위원회가 기간이 진행되다가 위증을 고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기간을 놓쳐서 특별위원회가 종료되면 고발할 수 없다는 것은, 의회가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한 고발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뒤늦게 확인해 가지고 다시 위원회도 아닌 본회의의 의결로 고발까지 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 처벌을 위해서 입법을 너무 남용한다는 정도의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회가 운영이 되면서 그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고 그러면 의결을 통해서 고발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시간을 경과시키고 나서 갑자기 다시 뒤늦게 그것이 위증이니까 내가 처벌해야겠다고 하면서, 거기다가 위원회도 아닌 그 회의에 참석한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통해서 고발을 한다 이렇게까지 지금 위증 고발을 위해서 무리하게 입법을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적절치 않고 외려 고발권의 남용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보여요.

그래서 지금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 외에도 청문회의 경우에는 채적 3분의 1의 연서로써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위원회 의결로만 하던 것을 이제 3분의 1의 연서로써 별도 고발이 가능하게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으로 충분히 입법적으로 보완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위원회 종결 후에 별도의 고발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현희 의원안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지금 보면 일부 의원안은 과거에 위증이 발견됐는데 그것을 고발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이 법에 대해서 진정소급효를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보편성·일반성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이 법이 나온 것은 특정 사람을 위증으로 고발하기 위해서 지금 각종 법안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위인설관이나 위인설법이나 다 똑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특정 사안에 대해서 그 사람을 반드시 처벌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다는 것, 이 자체는 법률가들이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하지 않아야 될 행동으로 다 지적을 해 왔던 부분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여기 보면, 고발 대상기관 확대는 지금 현재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을 여기에다 넣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해서 검찰을 해체해 가지고 직접수사권 자체를 없애는 상황에서 고발 대상기관에다가 검찰을 넣는 것이 적절한지 잘 모르겠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보니까 공수처에서도 14조의 규정에 따른 위증죄를 수사할 수 있게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그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고요.

고발하고 난 이후에 중간수사보고 그다음에 이송 시에는 이송사유보고 이렇게 해서 고발한 기관이 수사기관에 사실상 수사지휘를 하는 것으로 내용들이 많이 기재가 되어 있

는데 입법부가 하는 것은 입법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입법부의 역할은 거기서 면취야지 지금 입법부가 사법기관에서 하는 사법행위에 대해서 중간에 고발기관이라는 이유로 거기에 대해서 중간수사보고를 하고 또 이송을 하면 이송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와 같은 행태로 지나치게 사법기관의 수사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위헌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진석 하실 겁니까?

○박충권 위원 예, 저도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위증죄 고발 여부는 우리 국회가 가지는 재량권 범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증언감정법 15조에도 고발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증의 죄를 범했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그 고발에 따라서 고발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고 2개월 이내에 종결되어야 된다라고 현행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고발이 없이도 수사를 진행할…… 공소제기가 될 경우에는 입법행위 일반이 사법부 판단에 기속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서로 간에 삼권분립에 있어서 침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부조직법 개편하고 검찰을 공소청으로 만드는 그런 법들 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게 지금 고발 대상기관을 다양하게 확대를 해 놓게 되면 공수처, 중수청, 검찰, 경찰까지 어떻게 보면 고발기관을 쇼핑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또 모든 기관들에 동시다발적으로 고발이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증을 범한 사람의 방어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침해될 수 있는 과정 입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지만 수사정보의 비공개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는, 그로 인해서 개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과 이런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한 수사 과정에 대해서 국회가 지나치게 관여하는 부분 이것도 삼권분립의 침해 소지가 있다. 해서 위헌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된 다음에도 본회의가 권한을 승계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회의장에게 너무 포괄적인 고발 권한을 확대해서, 강화해서 부여하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당 출신의 국회의장에게 너무나도 지나친, 과도하고 무소불위의 사후 고발 수단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진석 다른 분 없습니까? 저도 한말씀드릴게요.

○신장식 위원 의견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인입법,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법 아니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고 총리가 국조에 나와서 위증을 할 줄이야. 그런 일을 예상하지 못했던 거지요. 어찌 보면 상식선을 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국회증감법이 그렇게 예상된 상황에 맞춰서 철저하게 대비되어 있지 않았다, 오히려 국회가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저는 전속고발권은 유지를, 국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하는 오기형 의원님 안에 대해서 의견 드리고요.

지금 22대 국회 들어와서 국회 개원 이후 10개월 만에 증감법 위반 고발이 128건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사 결과 나온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라도 받겠는데 이게 무슨 수사자휘권이다 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실은 증감법이 있으나 실제로 작동하지 않고 정치적 액션 하고 말던 그 법을 실질적으로 작동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국회의 의지의 표현이지 이게 뭐 수사자휘권까지 갈 만한 그런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별 의견을 드린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 법안의 대체토론 중심으로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전속고발권은 유지하는 게 좋겠다, 수사보고받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의견 드립니다.

**○허영 위원** 오기형 의원안은 제가 봐도 검사의 자의적 공소제기하고 검찰권 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검찰을 고발을 하는 기관으로 선정하는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검사의 수사권을 공소청으로 제한하는 그런 정부조직법이나 입법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검찰 수사 기관은 제외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신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회에 와서 진술인들이 위증을 했을 경우에 있어서 정말 단호한 어떤 처벌을 하지 않으면 국회의 책임성과 진실성과 또 국회의 권위가, 그야말로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권위가 훼손될 수밖에 없는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삼권분립을 해치는 문제가 아니라 대의기관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 책임성과 그리고 권위들을 세운다는 측면에 있어서 입법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급입법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헌법재판소에서도 여러 가지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진정소급입법을 허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판례가 있고 최근의 위증 사례들은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그리고 내란 사태에 대한 과정에서 발생한 그런 위증 여부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급입법의 예를 남김으로 인해 가지고 반드시 처벌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장식 위원** 진정소급입법인지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김남근 위원** 처벌하지 않기로 한 범죄를 새로 처벌하는 게 아니고……

**○신장식 위원** 진정소급입법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워요.

**○김남근 위원** 처벌의 필요성 부분에 대한 절차가 마련이 안 돼서 절차를 마련하는 거니까……

**○김준혁 위원** 김준혁입니다.

이 내용으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당혹스럽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도 지금 재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런데 잘못된 위증을 통해서 국가와 국민들에게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것이 시기가 지났다, 위원회가 종결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무혐의 처분되고 죄가 없어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그저 정의의 문제입니다.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상범 위원** 우리가 항상 위원회라는 것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 해서 여러 가지 증언이 나왔고 또 여러 가지 위증에 대한 고발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여 건의 고발을 했습니다. 많은 고발을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은, 모든 것을 그물에 다 가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진상이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기존에 있던 제도는 잘못된 것처럼 해서 새롭게 사후에 고발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과거에 있었던 것 중에 특정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을 하나 만든다는 것은, 입법을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일반성·보편성이라는 기준을 항상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시대가 지나서 또 다른 소급입법이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낳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진정소급효라는 것이 갖고 있는 것은 형사법상의 대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거거든요. 아주 예외적이고 아주 중대하고 그래야 되는데 특정, 겨우 위증을 가지고 진정소급효를 한다고 하는 이 모습이 황당하고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진정소급효를 인정한 게 뭐냐 하면 소위 말하는 전두환 내란 사건이지요. 사실 다 지났는데 그것 가지고 진정소급효를 가지고 수사를 해 가지고 처벌했지 않습니까? 중대한 사안이고 그런 경우라면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사안이라면 그렇게 갈 수가 있지만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 보면 딱 하나입니다. 한덕수, 또 누가 있나요, 말씀하신? 거기에서 특정인이 했던 사안인데 이 사람들 그렇다고 수사 안 받고 있습니까? 기소 안 됐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하나 더 엿겠다고 고발을 개정하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소급효까지 인정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법을 완전히, 소 잡는 데 써야 될 법을 닦 잡는 칼로 지금 쓰는 것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 상황이 납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처벌받아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소위원장 문진석** 그러면 위증죄로 처벌하지 말자는 얘기인가?

○**유상범 위원** 아니, 입법적으로……

○**소위원장 문진석** 아니, 그러니까 위증죄로 처벌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먼저 판단하고 위증죄를 처벌하라는 것이 중감법이잖아요. 그런데 중감법이 법적 미비가 있어서……

○**유상범 위원** 법적 미비가 아니지요. 이것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 안에서 위원회가 활동기간이 있었는데 활동해서 고발했어야 됐는데 고발 안 한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문진석** 잠깐만요.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이 법은 사실 큰 틀에서 보면 국회의 기능, 소위 말하면 청문회라든가 국정조사, 국정감사 이런 국회가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기능들을, 뭔가 이 기능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또 법·제도를 만들고 이러기 위해서 하는 국회의 중요한 기능들을 무력화시킨다는 거예요, 중감법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그러면 국정조사 나와서 거짓말해도 용인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진실을, 증언을 유도하기 위해서 중감법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중감법을 그냥 처벌하기 위해서 있는 조항이다 이렇게 단순화시키면 저는 위증죄 처벌하지 말자는 얘기하고 똑같다는 얘기이고. 결국은 중감법 개정이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의 미비…… 이 중감법을 그러면 아예 없애 버리든가, 불필요

하다고 하면.

그런데 이게 필요하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증감법을 만들고 계속 증감법에 대해서 증인들도 고발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안 해요. 수사를 안 하니까 최근의 떠지 사건에서 보듯이 검찰수사관들이 나와서 제대로 증언을 안 하잖아요. 왜? 증언 안 하고 거짓 위증해도 처벌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지요, 그 증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진실 규명이 안 되는 거지요.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 국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그저 이렇게 정부 예산이나 심의하고 이런 기능밖에 되지 않는 거지요, 법이나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국회의 기능을 이렇게 좁히고 무력화시키고 국회의 권위를 떨어트리고 있는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라는 게 바로 증감법 개정안에 나서게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남근 위원 그 점에 대해서 보충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위증 사건이라는 게 그 회의 중에 밝혀지지 않습니다. 한참 뒤에 다른 증거 같은 것들이 나타나 가지고 상당 기간이 지난 다음에 위증의 증거가 밝혀져 가지고 처벌되는 것들이 일반적이지요. 그래서 증감법에 의한 고발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위원회에서 회의 중에 발견해서 바로 즉각 고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은 나중에 증거가 확보돼 가지고 그 증거가 확보됐을 때 고발을 하는 게 일반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입법적인 불비가 있었던 게 상시적으로 계속 운영되는 위원회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뒤에 또 다른 운영 위원회 회의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고발을 하면 되는데 일시적으로만 활동기간이 있었던 위원회의 경우에 있어서는 활동기간이 끝난 다음에 위증의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 다시 그 회의를 소집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위원회 자체가 소멸됐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는 입법적인 공백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입법적인 공백을 해결하자, 국회가 스스로 입법적인 공백을 발견한 것이니까 당연히 입법적인 공백을 메꾸는 것들은 국회의 책무라고 생각이 들고요.

소급효 문제에 있어서도 이게 실체적으로 처벌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처벌조항을 만들자는 게 아니잖아요. 헌법에 있어서의 진정소급효의 문제 이걸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처벌하기로 되어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친고죄와 같이 고발이 필요한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에 입법적 불비가 있기 때문에 그 입법적 불비 조항을 만들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새로운 처벌조항을 만들어서 소급해서 처벌하는 그 진정소급효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고요.

고발 사건을 다루는 수사기관의 문제는 저는 오늘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검찰을 빼고 사법경찰하고 공수처 두 군데에다가 수사하는 걸로 하고 그게 문제가 되면, 수사 쇼핑 얘기를 하시니까, 수사를 할 때 어차피 특정할 것 아니에요? 법에다가 그러면 수사할 수사기관을 특정하도록 하고 그 수사기관이 전속관할을 갖는 걸로, 수사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면 수사 쇼핑이니 뭐 이런 얘기는 얘기될 게 없어서……

○소위원장 문진석 상임위에서 수사기관을 특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김남근 위원 원래 또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할 때 그러면 경찰 또는

공수처 이렇게 고발할 리는 없고.

○**소위원장 문진석** 고발할 때는 국수본에서 할 수도 있고.

○**김남근 위원** 공수처면 공수처, 사법경찰이면 사법경찰이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우려가 된다고 그러면 하자 이거지요. 특정을 해서 고발을 하고 그 수사기관이 전속관할을 갖도록 하는 식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법리적인 쟁점들은 그렇게 진정한 법리적인 쟁점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문진석** 이 문제는 사실 정략적으로 볼 문제도 아니고요.

○**허영 위원** 제가 얘기한 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데 일단은 이것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외 사례 부분들을 얘기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들어 보면 이게 소급효를 인정할 것이냐 그 부분을 빼면 사실은 지금 조항으로도 위원회가 없어졌다고 해서 고발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규정을 보시면 15조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라고 돼 있거든요. 다만 판례상으로 특위에서 했을 때 특위 이름으로 하는 고발은 안 된다고 판결을 해서 우리가 못 한 것이지, 지금 이 15조 1항 조항을 해석한다면 만약에 위원회가 없어졌을 때는 본회의 명의로 고발을 하면 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전현희 의원님 안도 그런 것을 전제로 한 것 같아요.

다만 이 법을 바꾸는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소급효를 적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일 쟁점인 것 같은데, 특정 사건을 전제를 두고 또는 특정인을 전제를 둬 가지고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형법이나 형사절차법의 개정에 있어 가지고는 가장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소급효를 인정하는 어떤 형사 관련된 법의 개정은 반드시 나중에 위헌의 소지가 따른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문진석** 위증이 당시에 밝혀진 것은 아니고 이후에 밝혀진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시적인 위원회에서 위증이 발생했으면 위원회가 고발하면 될 텐데 그게 안 되고 특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한덕수라는 인물을 특정해서 이 법을 개정하는 게 아니고 그 인물로 인해서 이런 법의 미비가 있구나라고 알아차렸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하려고 한 것이지 한덕수라는 특정한 인물을 겨냥해서 이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취지 자체가 그렇잖아요. 물론 그 한덕수라는 특정 인물이 고발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것을 개정하는 게 아니라 이 법을 한 번 개정하면 이후에 똑같은 사례가 나왔을 때는 이 개정된 법을 통해서 고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꼭 특정인을 겨냥해서 이 법을 개정한다 이런 측면보다는, 단지 한덕수라는 인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법의 미비를 알아차렸을 뿐이지 한덕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이 법을 개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략적으로 볼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국회 권위를 세우는 것이고 국회의 기능을 제대로 작동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청문회나 국정조사나 국정감

사에서 위증을 하면 청문회나 국정감사 이런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실 없는 것을 좀 더 수사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수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위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급입법 이런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박충권 위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일리가 있고 또 동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위증죄를 처벌하지 말자가 아니라 위증을하게 되면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100건이 넘는 고발 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를 안 하거나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런지, 왜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숙의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국회가 너무 지나치게 고발을 남용한다든지, 그래서 수사하기 애매한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으로 고쳐야지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삼권분립에 침해 소지가 있는 것까지, 이 위증죄를 처벌하겠다고 해서 삼권분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 조항을 우리가 만든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진석** 그러면 동어반복하시면 안 되니까 이 정도 논의하시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증감법 개정안들에 대해서는 다음 안건을 심사한 후에 의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부칙에 소급효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두고 있는 게 전현희 의원님 안 하나인가요?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예,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진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10항까지 국회기록원 설립과 관련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상수 수석전문위원, 심사자료의 내용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제8항부터 제10항, 국회기록원 설립입니다.

국회기록원법안, 국회법 및 국회도서관법을 국회의장께서 의견 제시를 하셨습니다.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법안들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도서관은 입법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분류·정리·보존·평가·활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하부조직인 국회기록보존소에서 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회기록보존소의 조직 형태상 제약으로 인해 기록물 관리기능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입법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 수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기록물이 임기 종료와 함께 대부분 폐기되거나 소실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기록원법안은 국회기록보존소를 확대 개편하여 국회 소속기관과 동일한 차관급의 독립적인 국회기록원을 설립하려는 내용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은 조직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칙 12개 조문과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계는 예산정책처법이나 조사처법과 유사합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기록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국회도서관법 개정안은 도서관 소속 국회기록보존소의 직무 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 직무 규정이 국회기록원으로 이관됩니다.

현행 국회기록보존소의 조직 형태상 제약으로 인해서 국회기록물 관리의 한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기록물을 수집·관리하는 기관이라는 특수성과 또한 국회기록물 관리기능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측면 그리고 다른 정부나 여타 기관의 기록물 관리조직 현황 및 주요국의 기록물 관리체계 등을 참조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조문별 검토입니다.

제1조(목적)은 목적 규정의 국회 소속기관 입법례를 참조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지위 및 직무 등입니다.

제정안 제2조는 국회의장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국회기록원의 수행 사무로서 국회 소관 기록물 관련 업무, 국회의원(전직 국회의원 포함)·교섭단체·정당 기록물 수집·관리 그리고 헌정자료 수집·관리 및 국회박물관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원장의 기록물 공개·활용 노력 의무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 제22조의4는 국회기록원을 두고 있으며 원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도서관법 제2조제1항제4호는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내용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 제2조는 기록원은 국회의장 소속으로 두며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 소속기관의 여타 입법례를 참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원의 직무입니다. 국회 소관 기록물 관련 업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의 수행 업무를 규정한 것으로 국회의원(전직 국회의원 포함)·교섭단체·정당 기록물 수집·관리는 입법부 주도로 체계적인 수집·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규정한 것으로 헌정자료 수집·관리 및 국회박물관 운영은 국회사무처에서 수행 중인 사무를 국회기록원으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원장의 기록물 공개 활용 노력 의무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정당 기록물은 정당은 정당법에 근거를 둔 당원으로 구성된 단체이기는 하나 정당의 활동이 입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당 기록물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공적 영역에서 관리되지 못하여 소실

되거나 폐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31페이지,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국회기록원은 차관급 국회 소속기관의 장인 도서관장·예산정책처장·입법조사처장의 임면절차와 동일하게 운영위원회 동의를 받아 국회기록원장을 임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는 여타 국회 소속기관 입법례와 유사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국회도서관법 개정안입니다.

기록보존소 직무 삭제입니다. 국회기록원 설립에 따라 국회기록보존소 직무 내용을 국회도서관법에서 삭제하고 국회법 개정안에 이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원장, 국회기록원장추천위원회 및 임명동의 시 첨부서류입니다.

제4조는 원장의 신분을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하고 전문성 확보 및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는 국회기록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임명토록 하고 있으며 제6조는 임명동의 시 첨부서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 추천위, 첨부서류입니다.

이는 국회 소속기관 법과 해당 내용이 동일하며 원장의 직급은 차관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직무 내용·성격 및 특수성, 조직 및 인력 규모 등을 고려한 취지로 보입니다.

사무처는 이에 대해서 300개의 현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기록물과 교섭단체·정당 기록물 등은 직무범위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위상과 책임을 갖출 수 있도록 차관급으로 규정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공무원의 임용 및 조직입니다.

안 제7조는 소속 공무원의 임면권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는 보조기관 구성 및 직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도 여타 국회 소속기관 법과 해당 내용이 동일하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자료제공, 위원회 보고, 자료 요청 및 위임규정입니다.

제9조는 자료요구에 대한 제공 의무를 그리고 제10조는 위원회 보고·설명, 제11조는 자료제공 요청, 제12조는 국회운영위 동의를 얻어 국회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보고는 여타 국회 소속기관 법과 해당 내용이 유사하며 자료 요청도 국회법, 국회도서관법 등 국회 소속기관 법과 입법례를 참조해서 유사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한편 자료제공 요청권을 부여한 취지는 조사·연구·분석·평가·회답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국회기록원의 직무가 이러한 직무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측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사무처는 이에 대해서 동 조항 활용 시 기록물 연구·활용 등을 위하여 타 기관으로부터 기록물 사본 등을 제공받을 수 있어 원활하게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위임규정도 여타 국회 소속기관 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부칙입니다.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되 국회기록원장추천위원회에 관한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2조는 소관 사무 및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부칙 제3조는 다른 법률의 개정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일을 공포 후 2개월로 한 취지는 국회기록원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기록원장추천위원회는 구성 및 원장 추천 절차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원장 임명동의 요청 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경과조치로서 국회기록원에 이관되는 사무인 국회 소관 기록물 관련 업무, 헌정자료 수집·관리 업무, 국회박물관 운영 등을 원장이 승계하도록 하고 국회기록원으로 이체되는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 소속 공무원은 국회기록원 소속 공무원으로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 개정입니다.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원장을 추가하여 국회사무처법상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권한 위임 대상에 국회기록원과 원장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진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시까지만 일단 오전 회의를 운영할게요. 앞으로 10분 동안 의견 주십시오.

○**김준혁 위원** 김준혁입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예전에 대한민국 연구사 조직 중에, 연구 직렬 중에 기록연구직을 제가 최초로 제안해서 기록연구직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당시 행안부장관한테 이야기해서. 현재의 국가기록원도 과거에 정부기록보존소로 있었는데 국가기록원으로 승격해야만이 기록에 대한 온전한 체제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 안의 기록보존소가 국회기록원으로 가는 것은 저는 논의할 내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것은 단순하게 국회의장만의 기록물이 아니라 삼백 분의 모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과 관련된 기록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마땅히 지금 필요하다, 지금 늦었다 생각을 하고 빨리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진석** 오늘 참고로 국회사무처장님 나오셨으니까 물을 내용이 있으면 사무처장님한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위원** 김준혁 위원님처럼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 국가기록원이 있는데 그 국가기록원의 인력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국회사무처사무처장 박태형** 국가기록원은 250명입니다.

○**곽규택 위원** 250명. 거기 국가기록원장님이 차관급인가요?

○**국회사무처사무처장 박태형** 실장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실장급.

지금 여기 외국 사례도 쭉 아마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영국은 조금 불분명한 것 같지만 미국·독일·프랑스, 우리나라보다 의회 역사가 100년 이상씩 긴 나라들도 사무국이나 사무처에 소속돼 있는 부서로 보이고요. 재정 소요를 보면 45명을 순증을 해 가지고 연

평균 정원 75명, 사업비는 제외하더라도 연평균 75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지금 계산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 전체의 기록물을 관리하는 국가기록원에 비하면 지금 국회에 국회도서관이 아닌 새로운 국회기록원까지 필요한 상황인가, 국회도서관 산하에 있어서 뭐가 불편하시다 그러면 외국처럼 국회사무처 입법조사처 산하에 두시면 될 것 같은데 왜 별도로 차관급 기능까지 하는 국회기록원을 둬야 되는지, 아무리 국회에서 정하는 국회 내부의 것이라 하지만 이거 다 국가 살림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조금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진석** 사무차장님, 75억이 증액되는 게 아니고 기록원 설립을 함으로 인해서 증액되는 금액은 좀 더 작지 않나요? 원래 있던 인원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일단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국회기록원을 할 경우에 규모는 한 70~75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그 기록과 관련된 업무 현행 인력이 기록보존소에 27명 그다음에 문화소통기획관실 전시인력 3명 해서 3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소속기관 업무 조정에 따라서 도서관으로부터 사서 10명을 저희가 지원받기로 서로 협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기본적으로 40명은 기존 자체 내에서 이렇게 충당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봤을 때 신규로 조금 필요한 부분은 30명~35명 수준으로 보고 있고, 이거에 필요한 거는 아까 말씀 주셨지만 인건비나 기본경비를 포함해서 한 사람당 한 1억 정도로 봐서 30억~35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아까도 말씀을 주셨을 때 독립기관화를 하고 차관급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정부기관이 많고, 여기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부기관이 생산한 문서를 그냥 등록해서 이관된 기록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국회도서관 기록보존소도 그 정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속기관이 생산한 문서만 등록된 것을 이관받아서 관리하는 수준에 멈추고 있는 데 비해서 이번 기록원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헌법기관인 삼백 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기록물하고 그리고 입법과정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정당, 교섭단체 그 영역이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기존에는 그냥 모아지는 수동적인 것이었다면 이 영역까지 적극적으로 모아서 입법부 차원의 종합적인 기록관리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도서관 산하에 있는 또는 사무처 산하의 어떤 일개 부서로는 사실 저희가 해 보니까 소속기관의 업무 협력도 어렵고 또 의원님들 그리고 교섭단체를 서로 대등하게 상대하면서, 소통하면서 원활하게 업무를 하는 데 현재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독립기관화해서 그 급도 조사처나 예정처처럼 차관급은 돼야 실질적으로 이렇게 의도하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승아 위원** 저도 짧게 말씀드릴게요.

국가기록원 아까 251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예.

○**백승아 위원** 보니까 대통령기록관 정원도 77명인 것을 감안하면 지금 국회기록보존소 27명은 너무 적은 것 아닌가. 거기에서 45명 순증하는 게 비합리적인 수준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단순히 지금 수집하고 보관하는 역할만 하고 있고, 제가 그때 설명 듣기로는 의원들이 자진해서 기록을 넘기는 경우 그런 것들 위주로 수집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21대 국회의원들 기록이 보관만 되어 있고 아직 정리나 기록이 제대로 안 된 케이스도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앞으로 기록물관리 기관으로서 기능을 하고 또 역할을 하려면 순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특히 비상계엄 사태 속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민주주의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 자료 관리하고 보존하고 또 공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활용하려면 순증하는 것,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왜 차관급이 있어야 되냐고 하셨는데 찾아보니까 다른 국회 기관장들, 사무차장 도서관장 입법조사처장 예산정책처장들이 다 차관급 맞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예, 맞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래서 독립적으로 기록원이 운영되려면 그것에 상응하는 지위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진석** 허영 위원님.

○**허영 위원** 이게 보니 연평균 75억이 들어가는 것은 전체 재정 소요고 순증 인원을 45명으로 봤을 때 재정 소요는 한 46억 정도 들어가는 것인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예.

○**허영 위원** 적정 소요인 것 같고.

제가 쭉 보니까 이게 2013년 이후로 꾸준히 독립적인 기록기관 설립 필요성들이 제기됐더라고요. 18대·20대 국회에서는 기록보존소하고 박물관 통합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사례가 있고 지금 대통령은 한 분의 대통령기록관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거고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인 300명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기록은 본인들이 그 기록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고 도서관에는 본인들이 발간한 책자라든지 이런 것들만 도서관에 기증되어 가지고 보관되는 수준의 기록관리로 어떻게 대한민국 헌정사와 그리고 민주주의의 전당이기도 하고, 여기가 보통 보면 다양한 상임위 활동이나 모든 활동 기록들이 물론 녹취록으로 남겨져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국회의원 활동 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자료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한다면 학계에서도 이 기록원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나은 학술적 연구의 기반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교육학습 자료로서의 충실성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기록원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이 AI로 학습된다고 한다면 AI시대에 데이터 경쟁력 확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22대 국회 때는 정말 국회기록원 설립을 통해서 새로운 국회의 역사적 전설들의 기반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유상범 위원** 일단 마무리하고 오후에 할까요?

○**소위원장 문진석** 그럴까요? 좋습니다.

오후에는 기록원법 좀 더 논의하고, 증감법하고 기록원법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유상범 위원** 국회운영위에서 지금까지 합의 안 되고 의결해서 처리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문진석** 논의를 하고 이견이 있으면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김준혁 위원** 합의를 하시면 되지요.

○**소위원장 문진석**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 0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문진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국회기록원법 관련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유상범 위원** 국회기록원 관련돼서 답변할 분이 여기 누구 와 계신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예, 사무차장 와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국회기록물보관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이 어떤 거예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지금 현재 기록보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국회 소속 기관에서 생산을 해 가지고 등록을 해서 이관받은 기록물이 한 380만 권으로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한 20만 건 정도는 의원님하고 의장단 기록물을 일부 수집해서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우리가 기록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간 의사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것은 기록물이라고 하지 않고 최종 확정돼서 대외적으로 발표된 것 그것을 통상 기록물이라고 하지요. 그렇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지금 등록돼 가지고 온 것은 말씀.....

○**유상범 위원** 아니, 행정부든 사법부든 어디나. 사법부에서 판결문 초안을 기록물이라고 안 합니다. 그렇지요? 판결문으로 최종 확정된 것을 기록물이라 하고 그것을 남깁니다. 그리고 행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실을 예로 들면 대통령실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발표문을 내거나 또는 대변인실에서 발표문을 만들 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정리된, 수정을 거친 초안들은 기록물이라고 안 하지요. 최종 발표된 것을 기록물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기록관리소에서 보관하는 것은 국회의 활동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 그것을 기록물로 관리하는 거지요.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이 토론회를 열었다고 합시다.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 그것은 기록물입니까?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지금 현재는 기록보존.....

○**유상범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의원의 활동에 있어서 입법활동 기록물은 뭐니까? 법안 발의해서 통과된 것이 기록물이지요. 그렇지요? 법안 발의한 것까지 기록물이라고는 안 하지 않습니까?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통과됐고..... 그 과정에서 법안이 수정되고 정리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최종적으로 법안이 발의되면 기록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의안시스템에 이미 등록이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예.

○**유상범 위원** 그러면 의원이 어디 가서 대외적 활동을 한 내용 그런 자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록물로서 필요한 것이 아니지요. 의원이 낸 자기 책자, 선거 즈음해서 발간했던 수많은 책자들 그것도 기록물로 관리할 필요가 있나요? 그런 것은 기록물 대상이 될 필요가 없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지금 현재도 국회기록물관리규칙에 따라서 관리대상 기록물에는 예를 들어서 국회의 제도·운영 및 활동과 관련해서 국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조사·연구·검토보고서, 회의록, 시청각기록물 그리고 의장·부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소속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주요 활동 관련 기록물, 그 외에…… 이렇게 다양한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 내용의 중심을 잘 보시면 공식적인 기관의 활동에 의한 결과물을 말하는 겁니다. 의원 300명 모두가 헌법기관성을 갖지만 국회라는 기관을 놓고 볼 때 의원 개개의 활동이 공식적인 기록 활동으로 볼 수 있느냐, 그것을 기록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느냐에 대한 검토가 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검토가 전혀 없이 의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뭐든지, 이 규정에 의하면 국회의원의 활동 내용이 전부 기록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이것은 기록물에 대한 정의 자체에 논란이 있을 수가 있다 이 점을 하나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로 국회와 정당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정당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정치조직이고 별도로 정당법에 의해서 규율이 되고 있는 대상입니다. 즉 국회와 정당은 객관적으로 보면 전혀 관련이 없어요. 별개의 조직입니다. 별개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국회 기록물관리에 정당의 활동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개념 자체를, 국회의 기록물이라는 개념 자체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당의 활동이, 다양한 정당 활동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예.

○**유상범 위원** 매일매일 수십 건의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것이 국회 활동입니까? 아니잖아요. 의원이 참여하지만 그것은 국회 활동과 전혀 관계없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정당에 소속돼 있는 직원들 누구도 공무원으로서 월급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 세금으로 월급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정당 자체의 운영자금을 통해서 받는데 이 기록물을 국회가 가지고 간다? 이것은 엄청난 월권이에요, 내가 봐서는. 이렇게 가야 될 이유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국회와 정당은 별개의 조직이고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 기록물이 여기까지 들어간다는 것이, 나는 이 생각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기록원법에 정당이 들어간 취지를, 지금 위원님 말씀 취지도 이해는 되는데요 저희가 정당을 포섭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법적으로 교섭단체는 또 다른 개념일 수…… 교섭단체도 들어갈 거고요.

○**유상범 위원** 교섭단체는 국회법상의 개념이고.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런데 정당은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그런 정당 활동의 증거자료를 국회기록원에 넣는다? 이것 얼마나 난센스예요. 이런 정도로 국회가 기록물을 남기는 것을 광범위하게 인정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규정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다 포함시키는 모습이 적절치 않다는 부분을 하나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주요 선진국 기록물 관리체계를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 국가기록원과 같은 모습의 기록원 형태를 가진 데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모델로 삼은 데가 어디예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지금 의회 소속에 독립으로 되어 있는 곳은 영국 정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영국의 여기 소속된 기관의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는 상원 소속의 국장급 직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지금 40여 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런데 이걸 의회 관리체계에서 각각의 소속기관들의 숫자를, 자료가 충분히 제공돼야지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으니…… 국장급이 담당하고 있고 기록 수집·보존·관리, 정보 공개……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이 주요국 의회 관련해서 정당의 것을 관리하는 데는 있습니까?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정당을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은 독일 정도가 정당, 교섭단체 활동, 지역구 활동 그다음에 정치입장 표명, 선거활동들도 포함해 가지고 독일 하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독일 하원에서는 그걸 하고 있습니까?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예.

○**유상범 위원** 그런데 우리의 예는 영국을 모델로 한 모양이지요, 이것 만들 때?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모델은 저희가 사례로서 포괄적으로 각 국가의 사례를 살펴본 거고요. 저희 설정에 맞는 지금의 가장 적합한 모습이 뭔지를 이렇게 기록원법에 담은 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한 것이 되겠고요.

○**유상범 위원** 독일은 내각책임제잖아요. 총리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랑 또 모양이 좀 다르긴 하고. 그래서 이 안에 포함시키는 기록물에 대해서 국회와 구분되는 하나의 의원에 대한 활동을 기록물로 보는 문제 그다음에 별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정당에 대해서, 별도의 법에 규율되고 있는 정당을 가지고 그 기록물을 포함시키는 문제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법률적으로 서로 다른 인격을 이렇게까지 국회가 관리한다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하나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또 하나 보십시오.

여기 4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말씀하시는 거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70명 정도를 예정하고 있다, 그렇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예.

○**유상범 위원** 예정하고 있는데 40명은 자체적으로, 아마 추가로 40명 정도가 충원이 돼야 되는 문제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보면 정부에 있는 국가기록원은 251명에 고위공무원 가급(실장급)을 하나 1급을 놓고 있고요, 대통령기록관은 77명에 2급 국장급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기록원의 위상을 높여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차관급은 돼야 정당 이랑 얘기할 수 있다, 이건 기록원의 역할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지 거기에 있는 장의 지위가 어떤 거냐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의회에서 입법을 해서 기록원을 만들지만 적어도 일반 행정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록원의 규모나 그 내용 또 담당하는 양 이런 걸 검토해 보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국회에서 70명 정도 되는 인원을 가지고 차관급으로 보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일반 공무원의 어떤 임명 구조나 역할 등에 비춰 볼 때 지나치게 높게 지금 형성한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가 뭐든지 할 때 결국은 행정부의 유사한 기관과 규모·위상을 다 비교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해 놓으면 국회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차관 자리 하나 늘린다, 물론 사무처 직원들에게는 차관 자리가 하나 생김으로써 인사에 큰 숨통이 트이는 좋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그러면 우리가 77명 가지고 차관급 만들었는데 정부에서 행안부 소속의 국가기록원에 차관급 만들어 달라면 거부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차관급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까? 그리고 대통령기록관도 비슷한 인원인데 이것도 차관급 만들어 줘야 되나?

저는 이런 규모에 있어서 우리가 타 기관과의 균형성을 맞추는 노력, 고민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리가 늘어나고 높아지면 혜택을 보는 분이 많으니 이 자리에서 내가 그걸 지적하는 것이 다소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늘 보는 사무처 직원들이 원하는 내용이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지적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한 번 한 비슷한 조직이 에스컬레이트(escalate)되고 직위가 올라가면 앞으로 다른 직위도 다 같이 올려 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이런 직위를 같이 차관급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국회에서 그것을 거부할 명분이 없잖아요,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지적을 합니다.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답변을 요구 하자는 않겠습니다.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조금 부연설명……

○**소위원장 문진석** 예, 사무차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당과 관련돼서는 사실 정당이 우리 국회 안에 들어와서 입법부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유상범 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정당이 관여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관여하는 거고.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그래서 지금 일단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정당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범위는 원내정당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내 의석을 가진 정당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수집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저희가 들어가서 이러는 게 아니고 전담인력이 붙어서, 정당의 자발적인 어떠한 협조를 전제로 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차관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신 말씀 중에 사무처와 관련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기록원장은 사무처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기관장후보추천 위원회의 후보 추천을 받아서 의장님이 지명하시고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는 그런 절차

이고요. 사무처 공무원이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규모 이야기를 하실 때 70~75명일 때 차관급의 규모로서는 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예전에 조사처도 처음에 만들어질 때 차관급으로 시작할 때 65명으로 시작을 했고 예정처도 92명 정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70~75명, 정부하고 획일적으로 그 규모를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국회의 어떤 필요로 하는 기능에 따라서 차관급에 대한 그 부분은 설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 기관장의 위치가 어떤 식으로든지 정무직 차관급이 되어 줘야 국회라는 무대에서 책임성 있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현실이 있어서 이렇게 반영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소위원장 문진석** 잠깐만, 다른 분들 먼저 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그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 하실 분 있습니까?

**○김남근 위원** 유상범 위원님께서 그렇게 또 얘기하시니까, 지금 이 법의 3조 1항 2호에서 국회의원의 기록물, 정당의 기록물 하니까 굉장히 포괄적이다 그런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면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원·정당의 기록물 이렇게 조금 범위를 좁혀서 필요성이 있으면 나중에 좀 확대를 하더라도…… 일단 국회법에 의하게 되면 국회의원이 국회법에 따라 하는 활동들이 있고 정당·교섭단체가 해야 되는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기록물들은 기록을 보존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출범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유상범 위원** 국회법에 따른 정당의 기록물이 없습니다. 국회법에는 정당의 기록물이라는 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김준혁 위원** 유상범 위원님의 그 말씀도 굉장히 존중되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김남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한번 차장님께서 그 안을 조금 더 조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정당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국회기록원에서 정리하는 것은 약간 무리수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판단을 처음에는 좀 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기록원의 설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옛날 조선 시대 때도 사관들이 다 기록을 초서를 해 놓고 집에다 두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가장 사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다가 임금이 돌아가시고 나서 실록청이 만들어지지요. 그러면 사관들이 갖고 있었던, 전임 사관부터 현임 사관들까지 모두가 다 가장 사초를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해서 실록청 안에서 그걸 다시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해서 그 기록들을 모두가 다 실록 안으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내용들, 중복된 내용들은 빼기도 하고 또 정 필요 없는 내용들은 제외해서 따로 보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결국 국회기록원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과거, 전 세계에서 가장 기록 문화가 뛰어난 나라가 우리 민족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이런 게 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일성록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걸 다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국회기록원 안에서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어떤 정치적인 이슈, 내용

또 기록물들 그리고 하다못해 국회 안에서 했던 공청회라든가 이제는 세미나와 관련된 자료들도 모아서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의원님들은 혹여라도 놓치거나 빠뜨리거나 혹은 잊어버렸을 수 있다 하더라도 기록원에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그 뒤에 의원님들 개개인의 어떤 훗날, 은퇴를 하셨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인물의 자서전이라든가 평전이라든가 만들 때도 다 기록원에서 기록을 제출해 줘서 쓸 수도 있고.

그렇듯이 이 자료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모아서 정리해 주는 역할까지가 지금은 기록보존소이기 때문에 보존의 역할이지만 기록원은 원으로서 연구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정리 이런 모든 것들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일부 조금 수정될 내용은 있으나 큰 틀에서는 이런 의미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합의적으로 잘 진행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문진석 허영 위원님.**

○**허영 위원** 보면 국회가 정당활동과 완전히 유리되지 않지 않습니까? 국회에도 양당 교섭단체 간에 정책위의장 협의체도 있는 거고 또 국회의 당론이라고 하는 의사결정 시스템도 분명히 있는 거고 또한 국회 정책위에는 각 상임위별 담당 전문위원들이 배치되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의원들과 상의하고 그것이 수렴되어서 상임위 법안으로 처리 절차를 거쳐서 본회의까지 올라오는 이런 프로세스들이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정당 소속 전문위원급이 국회에 파견되어서 실질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바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정당과 국회의 기록이 완전히 분리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국회 현정과 관련된 정당의 활동들은 수집되어서 보존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록원이 단순히 300명 국회의원에 대한 기록만 담당합니까, 사무차장님?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지금 국회기록원에서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미 국회 소속기관이 생산한 모든 공식적인……

○**허영 위원** 그걸 다 하시는 거지요? 예정처, 입법처……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예, 그렇습니다.

○**허영 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사무처의 소관 기록물들도 다 보관·관리하시는 거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예.

○**허영 위원** 정말 방대한 규모의 기록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AI 시대에 AI는 데이터 학습의 양과 질에 따라서 AI 성능들이 결정되어지는데 이런 방대한 기록물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입법부가 AI 3대 강국을 지향하고 있는 국가 비전에도 뒤처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인 국회 관련 기록물뿐만 아니라 정당활동의 기록물이 통합적으로 관리되었을 때 이러한 경쟁력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위원장님, 혹시 정당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니까요 기록보존소에서 지금 현재도 정당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얻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기록보존소 현장에서 어떤 건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기록보존소에서 한번……

○**소위원장 문진석** 얘기를 한번 들어 보실까요?

○**국회도서관국회기록보존소장 정정화** 정정화 국회기록보존소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관 기록물을 많이 수집을 하고 있지만 수집 기록물들은, 저희가 27명이 1개 국 조직이다 보니까 사실은 적극적으로 수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헐적으로 어떤 기회가 생길 때마다 겨우겨우 수집을 하고 있는 정도이고요. 그리고 정당도 입법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정책 결정과정을 뒷받침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케이스가 좀 생길 때마다 수집을 하다 보니까 한 1468건 정도의 정당 기록물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활용이 될 수 있게 저희가 정리를 좀 하고 있는 정도고요.

이번에 7월 17일 날 제헌절 행사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꺼내서 전시를 하려고 기획을 했던 적이 있는데 전시를 하는 업체에서 와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 입법활동을 증명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료다, 그게 조금만 더 수집이 됐었으면 이것을 전시했을 텐데 지금은 너무 소량이라서 전시에 활용하기는 어렵다, 이것을 조금 더 수집을 해 주면 나중에 대국민 홍보자료 이런 것들로 활용하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신장식 위원** 질문 있습니다.

새로운 제정법에서 정당과 국회의원 기록물을 수집하는 것은 요청하고 받는 겁니까, 아니면 강제로 수집하는 겁니까?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의무화 대상이 아니고요 의원실과 정당의 자발적 협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정당을 하더라도……

○**신장식 위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확인했고요. 강제 아니잖아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예.

○**신장식 위원** 강제로 기록 빼어 가는 것 아닌데 저는 오히려 훨씬 더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현재 96헌라2 판결, 2002헌라1 결정문 보면요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정당 민주주의다, 정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위임,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의정활동이 전부 다 자유위임돼 있는 것 같지만 정당 민주주의의 한계 안에서 자유위임돼 있다라고 현재가 결정하고 있어요. 현대 정치학에서도 현대 민주주의는 정당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약 500억 정도의 국고보조금을 정당에 교부를 합니다. 양당이 200 억씩 다 가져가서 문제기는 하지만 어쨌든 500억 정도의 국고보조금을 주고 있고요. 전문위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각종 국회 인력들을 정당에, 국회 안에 다 배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냥 너무나 이렇게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기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당 합당 합의문 이것 정당 기록입니까, 국회 기록입니까? 우리 지하 통로 왔다 갔다 하는데 3당 합당해서 기자회견 하는 것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이것은 정당 기록입니까, 국회 기록입니까? 저는 당연히 이것은 정당의 기록이자 국회의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기록원이 생긴다면, 지금 지나치게 이런저런 비판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꾸만 ‘이것 별것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하나의 측면과 ‘굉장히 중요합니다’라

고 얘기하는 2개의 논리가 설명하는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부딪치고 있어요. 오히려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당과 국회의원의 기록도 적극적으로 기록원에다가 제시할, 그쪽에 제출할 의무가 국회의원과 정당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정당도 국회의원들도 전부 다 국고보조금 받지 말고 정당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국회제도 다 빼고 그냥 300명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가야지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대한민국국회, 대한민국 정치는 정당 민주주의, 정당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회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기록원에서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당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국가의 기록으로, 국회의 기록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단순히 기록보존소가 아니라 기록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국민들에게 정치 리터러시 교육을 이 기록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 가 보니까 무슨 우편박물관 이런 데도, 우편기록보관소 이런 데서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굉장히 꾸준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기록을 모으는 게 이후의 사초로서의 역할도 있겠지만 결국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결정, 정책적 의사결정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좋은 정치적 판단을 할 것인가에 복무하는 것이 저는 궁극적으로 모든 국회에 있는 기관의 목표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활동과 기록을 국회의 기록, 국가의 기록으로 인입시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기록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치적·정책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리터러시 교육을 할 수 있는 적극적 계획을 내놓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 지금 여러분들 논리가 2개로 충돌해요.

사실 별거, 얼마 증원 안 하는…… 더 적극적으로 증원 요청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예산 요청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일할 거면.

#### ○박충권 위원 제가 짧게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사무차장님.

아까 유상범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헌법기관들, 국회 그리고 대통령실 그리고 법원을 이렇게 보면 이 3개가 다 삼권분립상의 어떻게 보면 서열을 매길 수 없는 동등한 급의 헌법기관들인데 국장급·실장급 공무원들로 돼 있습니다, 법원은 과장급이고. 그런 차원에서 국회만 별도로 차관급이 되게 되면 형평성 측면에서 어떤 이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동등하게 다 올려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같이 계속 일을 하는 입장이니까 저희도 이렇게 조직이 좋아지고 하면 좋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우려가 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겁니다. 차관급의 국가기록원 원장 임명을 누가 합니까? 정무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지금 이 법에 따르면요 공모 과정을 거치게 돼 있고요. 기록원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의장님의 그중에 한 분을 지명하시게 되면 운영위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박충권 위원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신장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초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국가기록원이 관련 기록물들을 홍보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역사

라는 것은 팩트 그대로 적혀지기보다는 그때 그 시대의 어떤 정치적 역학관계라든가 그리고 사람들의 세계관이라든가 이념에 따라서 정치라는 잣대가 들어가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편향되거나…… 정무직 공무원이 되게 됐을 때, 지금 우리가 실무급 기관장이 하고 있는데 정무직으로 됐을 때 국가기록원의 기록의 판단 기준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될 수 있는 그런 우려들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국회에서의 양당의 역학 구도에 따라서 편향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당대에는 홍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국민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봤을 때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립적으로 기록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기록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조사처나 예정처도 그렇고 법에 따라서, 원장의 경우에는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의무를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다른 소속 기관들도 거의 비슷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이게 국회 내의 운영위 소관 기관으로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편향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볼 때는 운영위의 여러 가지 통제를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충권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정감사를 한다든지 그럴 때 기록원장님도 출석해서 질문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예, 그렇습니다.

**○박충권 위원** 국가공무원들은 대부분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겠지만 어떤 정권이냐에 따라서 정무직 공무원들이 정치적 성향을 나타내는 것은 다들 잘 보아 오셨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가기록보존소였을 때와 그리고 기록원으로 됐을 때 그 기관의 장이 정무직 공무원으로 됐을 때 정치적 편향성에서 더 안 좋아진다 이러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인원을 늘려 주고 조직을 확대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게 정무직 공무원이 돼 가지고 정치적으로 혼들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또 하나 국회에서 그것을 두고 여야 간에 정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불필요한 정쟁을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의 의무 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국회 내에서 여야가 있는 가운데 운영위 소관 기관으로서의 충분한 감독과 통제 속에서 지금 우려하신 사항은, 결국 운영상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충분히 제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거는 다른 조사처도 그렇고 예정처도 그렇고 똑같은 상황인 거거든요.

다만 그 일이 국회에서 꼭 필요한 일이고 국회 입법부 차원의 기록관리체계를 책임지고 제대로 해낼 수 있으려면 그 정도의 위상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어떤 공감대가 학계나 이런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반영해서, 사실 큰 목적은 국회 입법부 관리체계에 있어서 지금은 행정부 수준을 따라가고 있는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국회에는 이렇게 의원님들이 계시고 또 원내 정당도 있으시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흡수해서 오히려 K-의회관리체계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도약의 계기로 삼으려는 게 이 법의 취지가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박충권 위원** 어쨌든 차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다 하실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숙의가 필요하고 우리가 좀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진석** 위원님들 다들 의견을 주셨고요. 백승아 위원님은 특별히……

○**백승아 위원** 아까 필요한 필요성에 대해서 다 말씀드려서요.

○**소위원장 문진석** 아까 얘기하셨지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거지요, 더 이상?

○**유상범 위원** 제가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진석** 말씀하세요.

○**유상범 위원** 원래 소위에서는 무제한 허용한다는 게 국회법에 적혀져 있습니다.

○**소위원장 문진석** 동의반복하면 안 되고.

○**유상범 위원** 동의반복 안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회 내에 기존 기록을 관리하는 곳이,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지요. 국회기록보존소가 있지요. 그렇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예.

○**유상범 위원** 그다음에 사무처 내에 의안과와 의정기록과가 있지요? 사무처 내에 의안과, 의정기록과가 있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기록과 직접적인 그런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글쎄요. 그다음에 문화소통기록기획관이 있습니다. 국회회의록을 또 별도로 관리하는 데가 있지요. 의안정보시스템이 있고 국회의사중계시스템이 또 있고. 그렇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예.

○**유상범 위원** 영상으로 정리하는 데가 있고.

그러면 현재 기록하고 정비하고 영상 하는 다양한 기구가 있어요. 기록원을 만든다면, 그렇다면 이 많은 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 정도는 논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중에서 몇 가지 역할을 한다면 말씀대로 기록원이,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기록원이 K-활동, 의원 활동, K-의회 활동을……

○**소위원장 문진석** 그런 것도 다 의정활동과 관련된 거 아닌가요?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의정활동에 관련돼 있는데 K-의회 활동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한다면 사실은 이렇게 다양한 기록 관리를 하는 부분을 국가기록원에서, 어쨌든 기록원까지 만들어서 차관급 자리를 줬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돼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기구 하나, 이거는 그대로 다 놔두고 별도로 국회기록보존소 이 가능만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의원의 기록활동, 의정활동의 기록물, 그러니까 그것이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도 특정이 안 된 상태로 말씀하시고. 또 정당의 기록활동물 그것도 마찬가지로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든지 어떤 합리적인 기준이나 내용을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정리를 해 버리니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꽤……

말씀하신 대로 처장이라고 하는 무슨 처, 보훈처 이런 것이 다 과거에 차관급이었고 그런 사람, 그만큼의 고위직을 앓히는 자리인데 이런 내용이 정비가 안 된 상태로 그렇게 얘기가 들어오니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정당활동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규정할지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고 내용 정리가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말씀도 있으셨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하셔서 좀 더 정비하고.

특히 이런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구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기왕 만드는 거라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추가 논의를 제안하는 바랍니다.

**○소위원장 문진석** 기록물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기록물이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영원히 보존해야 될 기록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일시적 기록물이 영구기록물로 전환되는 것 아닌가요?

**○국회사무처사무처장 박태형** 유상법 수석님이 말씀하신 그 범위에는 지금도 다 정비가 돼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의사국에 의안과 그다음에 속기 여기는 기록을 생산하는 부서입니다. 거기는 위원님들 회의록을 만들어 드리고 해 가지고 생산하는 부서가 되겠고요.

생산을 해서 등재를 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부분이 이관이 돼서 보존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 기록관리부서로서 기록보존소가 있고 문화소통기획관실, 행정박물 같은 것을 하고 있는 체계고요. 그런 생산부서와 기록물보존관리 부서와의 구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당 쪽에서 말씀을 여러 가지 너무, 그런 법체계나 또 범위에 있어서 그러신다고 하면…… 어차피 저희도 생각을 했던 부분은 정당이라고 할 때 우리 국회 내에서, 특히 입법부 안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원내 의석을 가진 정당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상법 위원** 그러니까 정당이라고 규정을 해 놓고 아무것도…… 본인들은 그걸 가지고 ‘원내 의석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그러면 다른 정당에서 ‘우리 것은 활동을 왜 안 해 줍니까?’라고 하면 법문을 ‘정당’이라고 해 놓은 상태에서 그걸 어떻게 거부합니까? 법문 정비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본인들이 말한, 여기서는 ‘원내 정당을 말합니다’라고 했는데 이 법의 규정은 ‘정당’이라고 쓰여 있으면, 우리나라에 수많은 정당이 있습니다. 그 정당에서 ‘우리 기록물 넣어 주세요’ 하면 거부할 방법이 있습니까?

**○소위원장 문진석** 수석전문위원 답변해 보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정당의 범위를 법문에서 한정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정당(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한정한다).

**○허영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문진석**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상법 위원** 아니, 정당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대체 어떤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기록물로 갈 거냐……

○**허영 위원** 그건 위임규정을 뒤서 국회규칙으로……

○**유상범 위원** 아니, 그러면 정당의 기록물로 하는 기준을 정당의 의견도 안 듣고 국회 규칙으로 그냥 만들어요?

○**허영 위원** 의견을 들어서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 아까도 많이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정당에서 의무적으로 뭘 무조건 뺏는 게 아니고요 협조를 받아서 정당이 원하는 걸 받는 거기 때문에……

○**허영 위원** 정당이 정당 스스로 기록하고 싶고 보관하고 싶은 것들 제출하는 거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예, 그걸 받는 거라서요.

○**소위원장 문진석**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분히 토론하셨으므로……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거기에 보충적으로, 37페이지에 보면 위임규정이 있습니다. 이 법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국회 운영위의 동의를 얻어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시행규칙을 만들 때 이걸 보완도록 하는 단서를 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요, 무슨 얘기인지 내가 지금 못 들었는데.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37페이지 보면 위임규정이 있습니다. 이 법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받아서 앞으로 국회 시행 규칙을 만들 때 반영도록 조건을 다는 것으로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유상범 위원** 그냥 종결하실 예정이지요?

○**소위원장 문진석** 예.

○**유상범 위원** 원래 소위에서 토론을 이렇게 짧게 하면 안 되는데.

○**소위원장 문진석** 1시간 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유상범 위원** 그래서 제가 추가로……

○**소위원장 문진석** 충분히 토론하셨으므로……

○**유상범 위원** 충분히 토론했지만 제가 아까 논의됐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과 관련돼서……

○**소위원장 문진석** 그것은 나중에 또 할게요.

○**유상범 위원** 또 하실 겁니까?

○**소위원장 문진석** 예, 기다려요.

○**유상범 위원** 아직 마무리, 한꺼번에……

○**소위원장 문진석** 건건이 할게요.

○**유상범 위원** 한꺼번에 할 것 아닌가요?

○**소위원장 문진석** 예.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유상범 위원** 잠깐만요.

○소위원장 문진석 8항만 할게요, 8항.

○유상범 위원 아니, 그러지 말고. 저는 지금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 다 반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의결한다면 저는 참여를 못 합니다. 의결에는 참여를 못 하고.

○소위원장 문진석 그러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회의를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소위원장 문진석 아니, 잠깐 기다리세요.

의사일정 제8항 국회기록원법 제정 의견 제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논의 사항을 반영하여 국회기록원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유상범 위원 반대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소위원장 문진석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 및 112조에 따라 거수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잠깐만요……

○소위원장 문진석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유상범 위원 이것 꼭 표결을 하셔야 되겠어요?

○소위원장 문진석 표결해야지요. 국회법에 따라서 표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위원장까지 해서 6명.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한 분입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 박충권 위원이 나가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을 부기해 주세요.

○소위원장 문진석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반대 1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9항 국회법 개정 의견 제출에 대해서는 앞선 논의 사항을 반영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유상범 위원 이 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의견을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진석 이것은 충분히 얘기하셨잖아요. 기록원 관련 부대법, 부칙법입니다. 기록원을 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토론은 더 이상 의미 없다고 보고.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 및 제112조에 따라 거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유상범 위원** 반대합니다.

○**소위원장 문진석** 손 들어 주시고. 내려 주세요.

○**유상범 위원** 그리고 국회운영위 소위에서 이렇게 표결로 진행한 전례가 없었는데 전례를 또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문진석 수석께서.

○**소위원장 문진석**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상범 위원**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실 예정인가요?

○**소위원장 문진석**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국회도서관법 개정 의견 제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논의 사항을 반영한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상범 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소위원장 문진석** 이의 없어요?

○**유상범 위원** 열심히 해요. 저 표결 참여 안 하겠습니다.

(일부 위원 퇴장)

○**소위원장 문진석**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전에 심도 깊게 심사했던 위원회 고발과 관련한 증언감정법부터 의사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활동 종료 위원회 위증죄 고발 요건, 고발 대상기관 확대 및 수사 중간보고 도입 등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오전에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수정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 제15조(고발) 1항,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제12조·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사기관의 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제4항,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가 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소위원장 문진석** 잠깐만요. 하나씩 짚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5조 1항, 수사기관의 장한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예. 이게 왜냐……

○**소위원장 문진석** 맞아요, 그게?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거 아니야? 경찰청장한테 고발하는 게 됩니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국가수사본부 아니야?

○**신장식 위원** 기관이냐, 장이냐?

○**허영 위원** 그리고 검찰총장은 수사 권한을 이제 폐지하는……

○소위원장 문진석 어쨌든 1년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넣어놓는 게 맞는데……

○허영 위원 아, 1년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신장식 위원 그렇지.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1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15페이지 각주 8번에 보시면요 고발 방식의 입법례가 다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례가 다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문진석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가를 여쭈는 거예요.

○허영 위원 이게 이병진 의원처럼 나중에 또 법을 개정해야 되잖아요?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예.

○허영 위원 수사·기소 분리 법안이 통과되고 실제 시행될 때 또 법 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위원장 문진석 중수처가 곧 수사할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수사, 나중에 좀 그거 하면.

그러니까 사법경찰……

○허영 위원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건 입법 방식이 다양합니다.

○신장식 위원 그런데 이거 ‘수사기관에게 고발할 수 있다’ 그러면 지나치게 넓어져서, 수사기관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김남근 위원 사실 효율로 따지면 장에게 하는 게 좋은 거지요. 장이 받아 가지고 거기 어느 수사 부서에서 하라고 배정을 하면 되는데 그냥 수사기관으로 하려면 결국은 일반 형사소송법 관할에 의하면 피의자의 주소지하고……

○신장식 위원 그런 데밖에 안 돼요.

○김남근 위원 사건 발생지가 되니까 영등포경찰서나 아니면 고발인이 있는 주소가 있는 데 고발해야 되니까 고발이 더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장한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되는 거지요.

○신장식 위원 국회에서 하는 거라서 그렇고 그다음에 수사기관이라고만 하면 수사기관에 특사경이 있어서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농해수위·행안위 이런 쪽에 특사경들이 있거든요.

○소위원장 문진석 장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신장식 위원 그게 더 용이합니다.

○김남근 위원 맞냐, 틀리냐 하면 그게 훨씬 효율적이고……

○신장식 위원 효율적입니다.

○소위원장 문진석 예, 알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장으로 안 해 놓으면 피의자의 주소지니까 여러 군데의 경찰서를 찾아다니면서 고발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그리고 제4항 넘어가겠습니다.

제4항,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제14조제1항 본문

의 죄—위증죄입니다—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가 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전현희 의원입니다.

제15조의2(수사기간 등) 1항, 제1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항, 제1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사건을 이송 또는 이첩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항, 수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항,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수사기관이 제3항에 따른 중간보고 없이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여 수사 중이거나 제3항에 따라 연장된 수사기간을 초과하여 수사 중인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거나 그 수사기관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항,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등의 사유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고 등을 받을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수사기간 연장을 할 수 있고 본회의는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읽겠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활동기한 종료 위원회 고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활동기한이 종료된 위원회에서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위증죄입니다—를 범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수사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1항,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항,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고 수사 중인 경우 검찰총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고 그 처분결과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제1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1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항,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검사가 제2항에 따른 중간보고 없이 같은 항에 따른 기간(1개월 이내를 말한다)을 초과하여 수사 중이거나 같은 항에 따라 연장된 수사기간을 초과하여 수사 중인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거나 그 검사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진석 그러면 이 보고 사항에 대해서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근 위원 저는 15조의2 5항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있는데 조치를 요구하려면 이게 논의가 필요할 수 있는데 어떤 조치를 요구할지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그 논의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본회의에서 하는 것보다는 특정 위원회한테 맡기는 식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필요한 정계 등을, 수사기관에 관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장식 위원 저도 그것 충분히 숙고해 볼만한 의견이긴 한데 그런데 이렇게 되면 본회의에서 고발권을 준 게 그냥 법사위로 다 고발권 넘깁시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치사항을 법사위에서 얘기를 한다면 고발권도 법사위에서 행사하도록 법사위에다 다 물자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교섭단체 간 협의나 다수 교섭단체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정치, 정무적 영역으로 남겨 두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떠세요?

○소위원장 문진석 정무적 영역으로 남겨 두면 실효성이 엄청나게 떨어져 버리니까.

○신장식 위원 그러면 이것 법사위로 가면 고발도 본회의가 아니라 법사위에서 다 하자 그런 논의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근본적인 반대는 아니고요.

○허영 위원 아니, 이거는 본회의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조항이 아니잖아요. 보고하고 또 의장은 거기에 따라서 연장할 수 있고 본회의는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 이 필요한 조치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다양한 고발 이것들 결정을 본회의에서 한다라는 거잖아요.

○김남근 위원 아니, 고발은 그냥 하나의 행위니까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고발을 할 수는 있는데……

○신장식 위원 조치는 논의의 영역이라는 거지.

○김남근 위원 조치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를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신장식 위원 사실상 의장단에다 맡기는 거지.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제15조의2 4항에 보시면 만약에 본회의에서 고발을 하면 수사기관의 장이 본회의에서 해명을하거나 수사기관에 대한 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 페이지 보면 15조 4항에서 활동기간이 종료된 특위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장 명의로 고발합니다. 그런 체계를 맞추려면 이것도 결국에는 본회의에서 해야 되는 게 타당한 결로 보입니다.

○신장식 위원 이게 ‘등’이 아니라 필요한 조치는 2개밖에 없네, 명시적으로.

○김남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5항, 4항 다 본회의에서 필요한 조치를 논의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좀……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사실상 본회의에서 논의한다기보다는 교섭단체에서 고발의 건이라든지 정계 요구의 건을 서면동의로 제출하면 단지 투표 행위만 이루어질 뿐입니다.

○소위원장 문진석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김남근 위원 아니, 하나만 좀 더 확인해 볼게요.

수사기관에서 와서 해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본회의에 와서 본회의장에서 해명을 한

다는 건 너무 비현실적이고.....

○**소위원장 문진석** 상황별로 다르겠지요. 본회의에서 해명을.....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그게 모든 게 아니고요 본회의에서 고발한 경우에 의장 명의로 했기 때문에, 의장이 본회의 전체 300명 의원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것은 본회의에서 수사기관이 경찰청장이든 검찰총장이든 와서.....

○**김남근 위원**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고발을 했다 그래서 그 해명이나 이런 것들을 본회의 단위에서 꼭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어느 위원회한테, 본회의가 어떻게 보면 법제사법위원회한테 위탁할 수도 있는 거고.....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그런데 체계를 맞추다 보니까.....

○**허영 위원** 본회의 보고라는 게 꼭 와서.....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서면보고도 가능합니다.

○**허영 위원** 서면보고도 되는 거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지금도 저희가 고발을 하면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하면 추가 연장 요구를 하거나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한테 서면보고를 합니다. 아마 이것도 서면이라는 말은 없지만 서면보고일 가능성은 많습니다.

○**김남근 위원** 보고라는 건 보고를 받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질의도 해야 되고 공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인데 그것을 본회의에서 한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보고를 받는다든가 본회의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되지.

○**소위원장 문진석** 체계적으로 안 맞을 것 같은데.

○**김남근 위원** 체계적으로 안 맞을 거야 없지요. 본회의가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나 그런 것에 대한 필요한 조치들을 위탁할 수 있으니까 체계상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본회의가 얼마든지 상임위원회에 지시를 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이것은 운영위에서 의결해 주시면 법사위 넘어가서 체계·자구를 보니까 법사위에서 또 만약에 의견이 있으시면 반영하는 게 나을 듯합니다.

○**김남근 위원** 그런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탄핵소추 같은 것도 할 때 본회의에서 의결해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가 조사하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본회의가 얼마든지 특정 위원회에 뭐를 하라고 할 수 있잖아요.

○**소위원장 문진석** 그것은 법사위에서 조사하라고 할 때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지요, 위원회 정해 가지고, 법사위 정해서.

○**김남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하나 있어야지. 그러면 본회의에서 마찬가지로 6항에다 4항과 5항과 관련된 수사의 보고와 필요한 조치의 요구는 본회의 결의로 법제사법위원회나 이런 데다 위임할 수 있다든가 그런 조항을 하나 만들면 되잖아요.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유사한 법을 하나 봤는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보면, 제16조(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에 대한 처리)가 있는데 6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회는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등의 사유로 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조치할 위원회가 불분명할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하여야 한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 **신장식 위원** 몇 조요?

○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제16조 제5항.

○ **김남근 위원** 그렇게 하면 아예 고발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 **신장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 있을까 봐 제가 그 걱정이에요.

○ **김남근 위원** 더 복잡하게 되니까 고발은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4항·5항도 그대로 놔두고 6항에다가 제4·5항의 본회의에서의 그런 보고나 그것들은 본회의의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하나 두면 되잖아요?

○ **소위원장 문진석** 그러면 법사위로 한번 넘겨 보지요.

○ **허영 위원** 그것 또한 그냥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법사위로 넘기면 됩니다, 굳이 그 조항을 둘 필요 없이.

○ **신장식 위원** 규정을 굳이 둔다면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본회의는 이를 적절한 상임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라든지 이렇게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안 해도 본회의가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허영 위원** 안 해도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다른 사법행위……

○ **소위원장 문진석** 그래요, 의결하면 되긴 하지.

○ **허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탄핵안이나 이런 것들도 그냥 넘기잖아요, 의결로.

○ **신장식 위원** 안 써도 할 수 있는 거다?

○ **허영 위원** 예.

○ **신장식 위원** 그러면 넘기셔도 될 것 같아요.

○ **김남근 위원** 그런데 국회법에 그런 것을 근거 규정을 둔 걸 보면 위임을 할 때 가능하면 그 근거 규정에 의해서 법사위에……

○ **소위원장 문진석** 너무 근거 규정을 뒤 버리면 이게 딱 거기에 얹매이게 되는 수가 있어서 본회의에 안건을 그렇게 올려서, 예를 들어서 ‘법사위에다 보고해라, 보고받아라’ 이렇게 안건을 올려서 본회의 통과되면 그렇게 조치를 할 수가 있지요.

○ **김남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우려가 되는 게 그냥 서면보고로만 계속 끝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서. 본회의에서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니까……

○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서면보고를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구두보고를……

○ **김남근 위원** 아니, 본회의에서 할 때. 본회의에서 하라고 그러면……

○ **소위원장 문진석** 본회의에서 요구하는 거지.

○ **김남근 위원**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그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뭘 지적을 하고 의원들이 거기서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한 조치는 이걸로 하십시오’ 하는 토론을 한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본회의는 거의 정해진 걸 표결하는 방식이지……

○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아무래도 상위 정치 단계라서 교섭단체에서 사전에 정리 작업을 해서 고발을 하거나 해명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하거나 물밑에서 작업을 해서 정리될 것 같습니다.

○ **소위원장 문진석**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올려서 ‘특정 상임위에서 보고해라’ 이렇게 하

면 보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고받게,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안건으로 올리면?

○**김남근 위원** 모든 건 다 법적 규정이 없어도 국회와 관련된 건 본회의의 의결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가능성……

○**소위원장 문진석**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놔두는 게 오히려……

○**김남근 위원** 근거가 없으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 그냥 국회 본회의에서 서면보고받고 형식적으로 끝나는 것으로 될 가능성이 많아서 그런 걸 우려하는 거지요.

○**소위원장 문진석** 사실 그래서는 안 되지요.

○**김남근 위원** 그러니까 근거 규정 하나만 두면 되는데, 본회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를 받고 해명할 것들을……

○**소위원장 문진석** 그러니까 본회의 서면보고로 끝내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이 법이 별로 실효성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을 고민을 좀 해 봐요.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구두라는 말을……

○**소위원장 문진석** 구두? 구두보고도 좀 그렇고.

○**김남근 위원** 그러니까 6항을 신설해서 4항과 5항에 따른 것들을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위원장 문진석**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고발한 사건만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고 상임위에서 고발한 사건은 상임위 와서 보고하고 따로 묻고 하는 것인니까.

○**김남근 위원** 그러니까 그건 지금대로 하면 되는 거고 본회의 것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조항을 하나 신설하는 게 어려워요? 만들어 드릴까요, 그냥?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문진석** 그걸 검토해 봐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휴정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문진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7항까지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통합 조정한 국회에서의 중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장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위원장 문진석** 잠깐만, 정리하고요.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대안 등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신장식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의사진행발언?

○**신장식 위원** 예.

○**소위원장 문진석** 하여튼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치는 상황인데.

○**신장식 위원** 다름이 아니라 어제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국회증감법의 절차상 불비를 개선하는 의결을 하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법안을 가지고도 충분히 고발할 수 있는 사안 그리고 국감을 앞두고 반드시 고발해야 될 사안이 바로 작년 국감, 운영위원회에 나와서 거짓 증언을 했던, 허위의 사실을 국감장에서 이야기했던 정진석·윤재순·김성훈에 대한 국회증감법 위반 고발입니다. 이 부분은 빠르게 운영위원회에서 국감이 시작되기 전에 고발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원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가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문진석**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

○**출석 위원(9인)**

곽규택 김남근 김준혁 문진석 박충권 백승아 신장식 유상범 허영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입법심의관 최남근

○**국회측 참석자**

국회사무처

사무차장 박태형

기획조정실장 이양성

국회도서관

기획관리관 박미향

국회기록보존소장 정정화